

제 1463 그 1호  
1989. 12. 27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공보관 유 천 수  
 전 화: 731-6111-3  
 인 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35-3337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2536호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 3

제2537호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3

제2538호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 5

제2539호 서울특별시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5

제2540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 ..... 5

제2541호 서울특별시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 ..... 8

제2542호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 9

(이년계속)

인																			
	민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2543호	서울특별시교통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9
제 2544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9
◎ 규 칙		
제 2318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 사무분장규칙	9
제 2319호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2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본청  
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536호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지  
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본청지방공무원 정원표 가. 일반회계중  
기능직정원 "419"를 "444"로하고 정원내용  
중 10등급 건축원"3"을 "4"로, 교환원"3"을  
"6"으로, 전기원20을 "22"로, 기계원 "24"를  
"23"으로(영사"6"을 "5"로), 통신원"3"을  
"4"로, 사무보조원"197"을 "210"으로(조무  
"113"을 "126"으로), 방호원 "40"을 "46"으  
로하고, 합계정원 "1,763"을 "1,788"로 한다.

(별표 1-2)

경찰급지방공무원정원표중 기능직정원  
"555"를 "564"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전  
기원 "15"를 "16"으로, 기계원 "35"를 "37"  
로하며, 사무보조원 "410"을 "416"으로(조  
무"342"를 "348"으로)한다. 합계정원 "612"  
를 "621"로 한다.

(별표 2)

구청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일반회계중 7  
급정원 "1,881"을 "1,893"으로하고 정원내용  
중 환경직 "26"을 "38"로하고, 8급정원 "2,  
784"를 "2,804"로하고 정원내용중 "기계도

는 화공직 20"을 신설한다. 별정직정원 "220"  
을 "232"로하고 정원내용중 7급상당 "141"  
을 "153"으로(사회복지전문요원 "35"를 "47")  
로 한다. 기능직정원 "3,398"을 "3,480"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7등급 전기장 "92"를 "97"  
로 하고 8등급전기원 "39"를 "40"으로하고,  
"기계원 1"을 신설하며 9등급 전기원"1"을  
"3"으로하고 "기계원4"를 신설한다. 10등급  
운전원 "1,067"을 "1,073"으로, 건축원 "5"  
를 "27"로, 전기원 "341"을 "354"로 기계원  
"187"을 "211"로(기계"158"을 "182"로), 사  
무보조원 "994"를 "998"로(조무"529"를  
"533"으로), 합계정원 "16,864"를 "16,990"  
으로 한다.

(별표4)

농촌지도소지방공무원정원표중 기능직정  
원 "19"를 "20"으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  
운전원 "3"을 "4"로하고 합계정원 "20"을  
"2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한강  
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537호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강장비와 항구적인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기위하여"

를 “도강장비의 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관리과, 방제과 및 시설과, 중앙하수처리장, 탄천하수처리장, 안양하수처리장 및 난지하수처리장을 둔다”를 “서무과, 관리과, 방제과 및 시설과를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내지 제6항을 다음과같이 한다.

②서무과장 및 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방제과장은 지방시설기정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임업기정 또는 지방시설기정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관인, 보안 및 인사
2. 기획, 행사, 홍보
3.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4. 유선, 도선, 선박에 관한 인·허가 및 운영지도 감독
5. 수상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6. 기타 소내 다른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관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이용 종합계획 수립

2. 하천법상 인·허가 업무
3. 수영장 운영
4. 지구관리사무소 지도 감독
5. 한강내 고수부지 및 수상청소

⑤방제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예방 및 대책
2. 지수로정비 및 수자원 공급
3. 수질보존 및 한강 생태계에 관한 보호 연구
4. 수상안전지도 및 긴급구조
5. 긴급도강 시설의 운영관리 및 훈련

⑥시설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이용 시설물의 유지관리
2. 하천시설물의 설치 공사
3. 고수부지내 공원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별 표)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지방공무원정원표는 별첨과같이 한다.

부 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2, 3급	1	행정직 1
4 급	4	행정직2, 행정 또는 시설직1, 임업또는 시설직1
5 급	15	행정직6, 행정 또는 화공직1, 행정 또는 별정직1, 행정 또는 선박직1, 선박직1, 토목직3, 임업직2
6 급	19	행정직8, 행정 또는 별정직3, 선박직1, 토목직3, 임업직2, 화공직1, 수산직1
7 급	36	행정직12, 행정 또는 별정직3, 행정 또는 임업9, 선박직2, 토목직3, 임업직2, 전기직1, 기계직1, 수산직1, 환경직2
8 급	31	행정직11, 행정 또는 임업직9, 토목직3, 임업직4, 화공직2, 선박직2
9 급	18	행정직3, 행정 또는 별정직10, 토목직1, 선박직1, 임업직2, 화공직1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별정직	1	7급상당 (기상요원)
기능직	95	7등급: 선장6, 통신장2, 기관장4 8등급: 선원3 10등급: 운전원19, 기계원5, 전기원8, 농림원7, 사무보조원16 (타자4, 집배1, 조무11), 방호원25.
계	220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p> <p>◎서울특별시조례제2538호</p> <p>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시립대학교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기능직 정원 "57"을 "63"으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 사무보조원 "30(타자5, 조무22, 집배1, 정산2)"를 "36(타자6, 조무27, 집배1, 정산2)"로하며, 합계정원 "131"을 "13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p> <p>◎서울특별시조례제2539호</p> <p>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에 "8등급: 사무보조원3(조무3) 및 9등급: 사무보조원10(조무10)"을 신설하고 10등급 사무보조원 "137"을 "124"로(조무 "134"를 "121"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p> <p>◎서울특별시조례제2540호</p> <p>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p> <p>제1조(설치)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 기타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 소속하에 증방, 탄천, 안양 및 난지하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한다)을 둔다. 제2조(위치) 처리장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3조(장장) ①처리장에 장장 1인을 두고 증방 및 탄천하수처리장장은 지방시설기정 또는 지방공업기정으로 안양 및 난지</p>		

<p>하수처리장장은 지방토목기과, 지방기계기과, 지방전기기과, 또는 지방화공기과로 보한다.</p> <p>②장장은 하수도법상의 하수처리장관리인으로서 시장의 명을 받아 장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조(공무원의 정원) 처리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p> <p>제5조(하부조직) ①중랑 및 탄천하수처리장에 관리과, 수처리과 및 오니처리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처리과장은 지방토목기과, 지방기계기과, 지방전기기과로 오니처리과장은 지방토목기과, 지방기계기과, 지방전기기과 또는 지방화공기과로 보한다.</p> <p>② 관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서, 관인, 보안 및 인사</li> <li>2. 기획, 청사, 공보</li> <li>3.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하수처리시설의 보수 개량 및 유지관리(기전사항 제외)</li> <li>5. 수계별 분류하수관로 유지관리</li> <li>6. 기타 소내 다른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p>③ 수처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처리 시설의 운영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li> <li>2. 하수처리 시스템의 분석 및 검토</li> <li>3. 시험, 분석 및 연구</li> </ol> <p>④ 오니처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오니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li> <li>2. 탈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li> <li>3.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중랑 하수처리장에 한함)</li> </ol> <p>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별표)

지 방 공 무 원 징 원 표

(중랑하수처리장)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4 급	1	시설 또는 공업직1
5 급	3	행정직1, 토목·기계, 전기 또는 화공1, 토목·기계·전기직1
6 급	9	행정직2, 토목직1, 화공직1, 기계·전기 또는 화공직3, 토목·기계 또는 전기직2
7 급	15	행정직3, 토목직2, 화공직2, 전기직3, 기계직4, 건축직1
8 급	17	행정직4, 토목직2, 화공직3, 전기직4, 기계직4
9 급	8	행정직1, 토목직1, 화공직1, 전기직2, 기계직2, 건축직1
별정직	4	7급상당2(고압가스관리기사1, 위험물처리기사1), 8급상당2(공해측정기사)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기능직	298	6등급: 기계 또는 전기장27 7등급: 기계 또는 전기장40 8등급: 기계 또는 전기원50 9등급: 기계원8 10등급: 운전원8, 기계원73, 전기원20, 농림원1, 사무보조원53 (타자3, 집배1, 조무49), 방호원18
합 계	355	
(단천하수처리장)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4 급	1	시설 또는 공업직1
5 급	3	행정직1, 토목·기계·전기 또는 화공직1, 토목·기계 또는 전기직1
6 급	8	행정직2, 토목직1, 화공직1, 기계, 전기 또는 화공직2, 토목·기계 또는 전기직2
7 급	12	행정직3, 토목직2, 화공직2, 전기직2, 기계직3
8 급	13	행정직3, 토목직2, 화공직2, 전기직3, 기계직3
9 급	5	행정직1, 토목직1, 화공직1, 전기직1, 기계직1
별정직	3	7급상당2(고압가스관리기사1, 위험물처리기사1) 8급상당1(공해측정기사)
기능직	159	6등급: 기계 또는 전기장19 7등급: 기계 또는 전기장24 8등급: 기계 또는 전기원29 9등급: 기계원2 10등급: 운전원4, 기계원28, 전기원11, 농림원1, 사무보조원32 (타자3, 집배1, 조무28) 방호원9
합 계	204	
(안양하수처리장)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5 급	1	토목, 기계, 전기 또는 화공1
6 급	4	행정직1, 기계 또는 전기직1, 토목·기계 또는 전기1, 화공직1
7 급	8	행정직2, 토목직2, 화공직1, 전기직2, 기계직1
8 급	10	행정직3, 토목직2, 화공직1, 전기직2, 기계직2
9 급	5	행정직1, 토목직1, 화공직1, 전기직1, 기계직1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별정직	1	8급상당 1(공해측정기사)
기능직	134	6등급 : 기계 또는 전기장15 7등급 : 기계 또는 전기장16 8등급 : 기계 또는 전기원24 10등급 : 운전원2, 기계원28, 전기원9, 농림원1, 사무보조원30 (타자1, 집배1, 조무28) 발호원9
합 계	163	
(난지하수처리장)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5 급	1	토목, 기계, 전기 또는 화공1
6 급	4	행정직1, 기계 또는 전기직1, 토목, 기계 또는 전기직1, 화공직1
7 급	7	행정직2, 화공직1, 전기직2, 기계직1, 토목직1
8 급	8	행정직3, 토목직1, 화공직1, 전기직2, 기계직1
9 급	4	행정직1, 토목직1, 전기직1, 기계직
별정직	1	8급상당 (공해측정기사)
기능직	95	6등급 : 기계 또는 전기장11 7등급 : 기계 또는 전기장11 8등급 : 기계 또는 전기원21 10등급 : 운전원4, 기계원15, 전기원9, 농림원1, 사무보조원17 (타자1, 집배1, 조무15) 발호원 6
합 계	120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㉞</p> <p>●서울특별시조례제2541호</p> <p>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3)</p>		
<p>(3) 근로청소년회관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정원 "39"를 "40"으로하고 정원내용 중 10등급 운전원 "2"를 "3"으로하고 한계 정원 "80"을 "81"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㉞</p>		



●서울특별시조례제2542호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생처리장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계  
원 "25"를 "26"으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  
급 운전원 "1"을 "2"로하며, 합계정원 "34"  
를 "3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통  
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43호

서울특별시교통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 정 조 례

서울특별시교통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정원표 기능직정원 "2"를 "3"  
으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운전원1"  
급 신설하고 합계정원 "11"을 "1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상수  
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44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  
개 정 조 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공무원정원표중 나  
사업소 정원표 기능직정원 "1,895"를 "1,907"  
로하고 수도사업소기능직정원 "1,106"을 "1,  
118"로하며, 정원내용중 7등급 "38"을 "40"  
으로하고, 기계장 "9"를 "10"으로, 전기장  
"29"를 "30"으로, 하마 8등급2(기계원2)를  
신설한다. 10등급 "1,060"을 "1,068"로하고,  
전기원 "45"를 "46"으로, 방호원 "18"을 "21"  
로, "통신원1"을 신설하며, 사무보조원 "578"  
을 "581"로(조무 "533"을 "539"으로)하고  
수도사업소 정원 "2,007"을 "2,019"로하며,  
합계정원 "2,997"을 "3,009"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사무분장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318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의 파이하의 조적과 그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방 및 탄천하수처리장)

①관리과에 사무제, 경리계 및 시설계를 두고, 사무계장, 경리계장은 지방행정 주사로, 시설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크하며,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제

- 가. 문서, 인사, 보안 및 관인관수
- 나. 기획, 예산에 관한 사항
- 다. 복무, 급여와 직원 후생
- 라. 운영요원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
- 마. 직원 숙소관리
- 바.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 사. 행사, 공보에 관한 사항
- 아. 처리장내 다문과 및 파내 다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계

- 가. 예산 지출의 총괄 및 결산
- 나. 사업의 원가계산 및 경영분석
- 다. 사업의 세입지출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 라. 공사, 제조 및 물품의 구매조달
- 마. 물품관리 및 재산관리

3. 시설계

- 가. 하수처리시설의 보수, 개량 및 유지관리(기전사항 제외)
- 나. 수계별 분류하수관로 유지관리
- 다.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위한 설계 및 시공감독(기전사항 제외)
- 라. 장내 토지, 건물, 구조물, 수도시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
- 마. 기타 처리장내 행비 및 조경

②수처리과에 수처리1계, 수처리2계 및

수질계를 두고 수처리1계장과 수처리2계장은 지방토목기사, 지방기계기사 또는 지방전기기사로, 수질계장은 지방화공기사로 보하며, 계별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수처리1계

- 가. 중계 펌프장의 유지관리 및 운전
- 나. 1차 처리시설(분배조, 침사지, 생이수펌프장, 1차침전지)의 유지관리 및 운전
- 다. 1차 처리시설의 기전설비의 보수개발 및 유지관리
- 라. 1차 처리시설의 처리분석 및 검토
- 마. 화재 및 수해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
- 바. 중앙감시반 유지관리 및 운전
- 사. 기타 과내 다문계의 주관이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수처리2계

- 가. 2차 처리시설(포기조, 2차침전지, 염소침착지, 방류펌프장)의 유지관리 및 운전
- 나. 장내 배수펌프장(장안유수지, 천봉유수지)의 유지관리 및 운전
- 다. 2차 처리시설의 기전설비의 보수개발 및 유지관리
- 라. 2차 처리시설의 처리분석 및 검토

3. 수질계

- 가. 하수처리 시스템의 분석 및 검토
- 나. 시험, 분석 및 수질공해 측정
- 다. 시험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각종 통계 발간

③오니처리과에 처리1계, 처리2계 및 처리3계(중방하수처리장에 한함)를 두고, 계장은 지방기계기사, 지방전기기사 또는 지방화공기사로 보하며, 계별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1계

가. 오폐수처리시설(소화, 농축, 가스, 발전기, 보일러)

나.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유지관리 및 운전

다. 오폐수처리시설의 보수개량 및 증설 계획

라. 오폐수처리시설의 처리분석 및 검토

마. 기타 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처리2계

가. 탈수시설(약품투입시설, 탈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전

나. 탈수시설 보수개량 증설 계획

다. 오폐수처리 방법의 연구

라. 오폐수배기물 처리

3. 처리3계(중량하수처리장에 한함)

가. 분뇨의 위생적 처리

나. 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전

다. 분뇨처리시설의 보수개량 및 증설 계획

라. 분뇨처리장에 투입되는 분뇨 및 분뇨차량 단속

마. 부산물관리 및 판매

바. 기타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안양 및 난지하수처리장) ①안양하수처리장과 난지하수처리장에 관리제, 처리제, 기전계 및 위생처리계를 두고,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처리계장은 지방토목기사, 지방기계기사 또는 지방전기기사로 기전계장은 지방기계기사 또는 지방전기기사로, 위생처리장은 지방화공기사로 보한다.

②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계

가. 문서, 인사, 보안 및 관인관수

나. 기획 및 예산

다. 복무급여와 직원 후생

라.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마. 사업의 세입지출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바. 공사, 제조 및 물품의 구매조달

사. 물품관리 및 재산관리

아. 기타 처리장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처리계

가. 하수처리시설의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기전사항 제외)

나. 장내 토지, 건물, 구조물 수도시설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

다. 중계펌프장의 유지관리 및 운전

라. 하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마. 시험분석 및 수질 측정

바. 수계별 분류하수관로의 유지관리

3. 기전계

가. 전기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전

나. 오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전

다. 오폐수처리시설의 처리분석 및 검토

4. 위생처리계

가. 정화조 오니의 위생처리

나. 정화조 오폐수처리 기전설비의 보수, 개량과 유지관리

다. 정화조 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기전설비

라. 정화조 처리시설 유지관리

제4조(관리대상) ①하수처리장의 분류하수관로 관리대상은 수계별 한강 분류상의 분류하수관로로 한다.

제5조(직무대행) ①중량 및 탄천하수처리장의 장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과장, 수처리과장,

오니처리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안양 및 난지하수처리장의 장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계장, 처리계장, 기전계장, 위생처리계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319호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리과”를 “서무과”로 하고 동조 제

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서무과에 서무계, 수상공원계 및 운항계를 두고, 서무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상공원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선박기과로, 운항계장은 지방선박기과로 보한다. 동조 제②항중 “관리과”를 “서무과”로 하고 동항 제2호 “운항계”를 “수상공원계”로 하며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상공원계

가. 수상이용 및 수상공원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수상이용 단계 및 협회 지도

다. 수상 스포츠 교실 운영관리

라. 시유 수상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마. 선박등 이용시인의 안전대책 수립

바. 선박기지 운영관리

사. 관광선 건조, 수리 및 관리

동항 제3호 “지도계”를 “운항계”로 하고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를 삭제한다.

3. 운항계

가. 유선 및 도선업의 신고, 인가 처리

나.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다. 측량의 운송 및 선박의 운항허가와 안전조치

라. 유선, 도선, 선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마. 항로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바. 선박내 행정절서 지도단속

사.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정용료 수수료 징수

아. 무단 수상이용행위 지도단속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5조로 제3조를 제4조로하며 제3조, 제4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과) ①관리과에 공원운영계, 관리1계, 관리2계 및 청소계를 두고, 공원운영계장, 관리1계장, 관리2계장 및 청소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관리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원운영계

가. 공원 이용 종합계획 수립

나. 미야, 유실물 보호 보관

다.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라. 하천의 정용허가 및 정용료, 수수료 징수

마. 스케이트장의 설치 허가

바. 지구관리사무소 지도감독

사. 토사의 불법 내댐 단속

아. 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관리1, 2제(강북측은 관리1제 강남측은 관리2제)

- 가. 하천의 무단점용 및 위법시설물 설치 단속
- 나. 하천 시설물의 훼손 행위 단속
- 다. 오물투기 및 위생상 유해행위 단속
- 라. 행락길서 유지 및 정기정화 지도,선도

3. 청소제

- 가. 고수부지내 공원 및 녹지대 청소
- 나. 강변도로 사면지 및 제방의 청소
- 다. 수상부유 오물수거
- 라. 환경미화원 임용 및 작업관리
- 마. 공중간이변소, 공중쓰레기 용기설치 관리
- 바. 청소차량, 장비 관리
- 사. 기타 한강내 청소에 관한 사항

제4조(방제과) ①방제과에 방제계획제, 치수제, 환경보전제 및 안전제를 두고, 방제 계획제장은 지방토독기과로, 환경보전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공기과로, 안전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방제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제계획제

- 가.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계획 수립
- 나. 한강재해대책반의 설치 및 상황실 운영
- 다. 수방단의 조직
- 라.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협동행동 요구
- 마. 경계구역 설정 및 지공물 철거
- 바. 복구공사 동원 명령조치
- 사. 재해대장 작성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 아. 파난경고 및 정보시설 설치관리
- 자. 수위 측정 및 홍수관의 예측
- 차. 파내·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2. 치수제

- 가. 수자원 조절 및 공급
- 나. 하상정비 및 저수로 준설
- 다. 하천의 전용허가
- 라. 유선장, 스케이트장의 설치허가
- 마. 토석 등 산출물의 채취허가
- 바. 점용료 및 허가수수료 징수
- 사. 공유수면 매립 면허
- 아. 하천의 지목변경, 등기등 국유화 조치
- 자. 공용부담에 의한 손실보상

3. 환경보전제

- 가. 수질보호 및 개선계획과 대책 수립
- 나. 하천 오염의 조사분석 및 방지
- 다. 수산자원 보호 및 증식 방류
- 라. 수중 동·식물 및 조수의 조사연구
- 마. 한강 생태계에 관한 연구 자료관리
- 바. 기타 환경 보전에 관한 연구
- 사. 내수면 어업허가 및 제한조치
- 아. 불법어로 및 조수수렵행위 단속
- 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4. 안전제

- 가. 수상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제공
- 나. 수상시설의 구난조치 및 인명 긴급구조
- 다. 긴급 도강시설, 장비의 운영 관리
- 라. 긴급 도강 수단의 연구 및 개발
- 마. 도강 교육 및 훈련실시

제6조(관리지역 및 대상) ①사업소가 설치 조세에서 정한사무를 집행하기위한 지역은 하천법상 서울특별시내의 한강구역에 한한다. ②사업소의 관리대상 시설물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내의 시장이 관리 하여야할 하천시설물과 하천이용 시설물로 하의 한강에 연한 도로 교량, 취수 유수시설과 수문 및 분류하수관로는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